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발급번호	처리기간	즉시
------	------	----

소득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	----------	------

(단위 : 원)

[]근로소득자용 (서민형은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자만 가입 가능,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

귀속연도	소득구분	원천징수의무자		총급여(과세대상급여)액
		법인명(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자용 (서민형은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인 자만 가입 가능,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자용」의 총급여액으로 판단)

귀속연도	종합(결정) 소득금액	근로소득 유·무		근로소득 외의 소득 유·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연금 소득자·종교인소득자용 (서민형은 사업소득·연금소득·종교인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인 자만 가입 가능,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연금소득·종교인소득 금액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

귀속연도	소득구분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연금·종교인소득금액 (해당 연도 소득금액)
		법인명(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에 따라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또는 연말정산한 사업·연금·종교인소득금액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일 현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소득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을 ([] 충족, [] 미충족)함을 증명합니다.

다만, 매년 6월 30일 이전에 직전 과세기간이 아닌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한 경우 또는 본 증명서 발급 이후 경정·결정, 수정신고 등의 사유로 증명서상 총급여액 등이 변경되는 경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국세청장이 확인하여 신탁업자 등에게 통보하며, 가입(연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통보받는 경우 그 통보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가입(연장) 시부터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직인

유의사항

-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 또는 근로소득과 그 외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자용」과 「근로소득자용」을 모두 기재합니다.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연금소득·종교인소득만 있는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연금소득자·종교인소득자 또는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연금소득·종교인소득과 그 외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자용」과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연금소득자·종교인소득자용」을 모두 기재합니다.
- 근로소득자용의 총급여(과세대상급여)액란은 외국인단일세를 적용 시에는 연간 근로소득이 표시되며, 일용근로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제출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총지급액(과세소득)을 기재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결정소득금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 증명신청일이 6월 30일 이전인 경우에는 신청일의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또는 연말정산한 사업·연금·종교인소득금액부터 기재하고, 7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신청일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또는 연말정산한 사업·연금·종교인소득금액부터 기재합니다.